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
(2012. 11. 27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11월 22일

나. 의안번호 : 12-98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다. 「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(행정안전부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「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('11.9.30.)」 및「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('12.11. 1.)이 시달되어 우리구로 확정 통보된 5명의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(1)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명 정원 순증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당초 1,240명에서 5명 증가한 1,245명으로 하고, 이에 따른 마포구 정원 총수 또한 1,269명에서 1,274명으로 개정함.

(2)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 순증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을 조정함.

< 검토의견 >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「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